광명시 경로당 설치 · 운영 지원 조례

제정 2008. 9. 24 조례 제1620호 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·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 동, 정보교환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.
- 제2조(경로당 설치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 인구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제3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비와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 7. 31〉
 - ② 시장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경로당 시설 운영비
 - 2.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
 - 3.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. 다만,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.
 - 4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·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
 - 5.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 -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〈개정 2016. 9. 26〉
- 제4조(보조금의 반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 - 1.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2.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 -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광명시 경로당 설치・운영 지원 조례

- 제5조(경로당 지원계획 수립)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6조(프로그램 개발)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하여야 한다.
- 제7조(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)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 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,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. 9. 26 조례 제219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